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335
----------	------

제출년월일 : 2005. . .

제 ■ 출 ■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종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흡수,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맞추어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골자

- 가. 제명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 다. 심의전 가격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목적증 표준주택가격 부분을 추가함(안 제10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29조, 제51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5. 3. 4. ~ 3. 24.(20일)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중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조중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제3항”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1조제3항”으로 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재산세과표 및 토지거래 허가신고업무”를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관련 업무”로 하고, “농협직원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와 토지평가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건축사 등 부동산 거래실무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8조제3항, 제29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및 표준주택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제2항중 “토지업무담당주사”를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를 “표준지가격 및 표준주택가격이 인근지역 가격과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도 시 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도 시 과 장 김 준 연
	담당·팀장 직위·성명	지 적 담 당 박 용 남
	담당자 성명·전화	한 상 덕 (행정 2152)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u>	-----부동산-----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u>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u>토지평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u>재산 세과표</u> 및 토지거래 허가신고업무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와 토지평가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생략)</p> <p>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평가에 관한 사항</u> 2. <u>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u> 3. <u>기타 토지평가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u> 	<p>제1조(목적) --- 「<u>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3항 ----- --부동산평가위원회----- ----- -----</p> <p>제2조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관련업무</u>----- --, <u>건축사 등 부동산 거래실무 또는 감정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u>----- -- ④(현행과 같음)</p> <p>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8조제3항, 제29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및 표준주택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u> 2. <u>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u> 3. <u>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 4. <u>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u> 5. <u>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 6. <u>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u>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 (간사등) ① (생 략)</p> <p>②간사는 토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p> <p>③(생 략)</p>	<p>제7조 (간사등) ①(현행과 같음)</p> <p>② --- 관련업무담당주사 ---</p> <p>③(현행과 같음)</p>
<p>제10조 (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전 <u>표준</u> 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등을 면밀히 검 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3~7 인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p> <p>②(생 략)</p>	<p>제10조 (소위원회) ①----- <u>표준</u> 지가격 및 표준주택가격이 인근지역 가격 과의----- ----- ②(현행과 같음)</p>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335
------------	------

제안년월일 : 2005. 4. 28.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안산시 토지평가 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게 하여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2. 주 요 골 자

- 위원회 구성원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2조)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축사” 다음에 “,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 ”를 삽입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구성)①~②(생 략)</p> <p>③ 위원은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건축사 <삽입> 등 부동산 거래실무 또는 감정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생 략)</p>	<p>제2조(구성)①~②(생 략)</p> <p>③....., <u>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u></p> <p>④(현행과 같음)</p>